

의안번호	제721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·운용 및
지원 조례안

발의자	이정범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·운용 및 지원 조례안

(이정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발 의 자 : 이정범·김성대·김정일
박병천·박봉순·박진희
유상용 의원

1. 제안 이유

- 가. 관사의 공급 부족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공
급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 개선
- 나.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안정
및 복지 증진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교직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라.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마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.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아.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- 자.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: 붙임
- 나. 비용추계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

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·운용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직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
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)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
2. 기금운용수익금

3.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
2.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·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.

제7조(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제8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기관의명칭	구분	기금관리직명	지정관직
본청	명령기관	기금운용관	행정국장
		분임기금운용관	재정복지과장
	출납기관	기금출납원	재산담당사무관
청주교육지원청	명령기관	분임기금운용관	재정과장
	출납기관	기금출납원	재산담당주무자
교육지원청	명령기관	분임기금운용관	행정과장
	출납기관	기금출납원	재산담당주무자

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.

제9조(지원대상)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·군지역 내 무주택자로 한다.

제10조(지원한도액) 1인당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,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 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5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, 2020. 1. 29., 2021. 1. 12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5.3.27.>

1. “교육공무직원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무기계약근로자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
나. 기간제근로자: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
다. 단시간근로자: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

2. “각급 기관”이란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소속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.

3. “공립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
□ 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6조(기금의 운용 심의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삭제 <2023. 11. 3.>

[시행일: 2024. 1. 1.] 제6조제3항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부교육감, 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예산과장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가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나.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
다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11. 3.] [시행일 2024. 1. 1.]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1. 3.] [시행일 2024. 1. 1.]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1. 3.] [시행일 2024. 1. 1.]

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·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공급자 중심의 관사 지원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임차비 지원으로 주거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
- 주택임차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연차별 조성 및 운용·관리 필요

2. 비용 발생 요인

- (세입)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, 기금운용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 등 재원
- (세출) 무주택 교직원의 주택 임차 보증금, 전세금 대여 등

3. 관련조문
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2. 기금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
2.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
1)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전제로 함

- 최근 3년간 공동관사 입주 희망자 중 미입주자

(단위: 명)

연도별	2022 (연도별누적)	2023 (연도별누적)	2024 (연도별누적)	계	평균
희망자	560	782	666	2,008	669
입주자	234	283	260	777	259
대기자	326	499	406	1,231	410

-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르며, 근무지에 주택이 없는 공무원, 교육공무직원

나. 추계 결과: 5년간 35,000,000천원 소요

(단위: 명, 백만원)

연도별	2025	2026	2027	2028	2029	계
인 원	200	200	100*	100	100	700
지원액	10,000	10,000	5,000	5,000	5,000	35,000

* 임차기금 시행 3년차부터 상환이 시작되며, 상환 비율을 50%로 산정하여 지원액 감액 조정함

- 1) 대부기간은 2년으로 대부 3년차부터 50% 상환 조건으로 추계
- 2) 100% 상환시 대부 가능액 증가
 - 2년, 2회(총6년)까지 대부 연장 가능하므로 상환액 감소 예정

다. 재원조달방안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국 재정복지과장 박종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10,000,000	10,000,000	5,000,000	5,000,000	5,000,000	35,000,000
자체수입	10,000,000	10,000,000	5,000,000	5,000,000	5,000,000	35,000,000
세 출	10,000,000	10,000,000	5,000,000	5,000,000	5,000,000	35,000,000
제5조제1호 (주택임차보증금, 전세금 대여)	10,000,000	10,000,000	5,000,000	5,000,000	5,000,000	35,000,000
제5조제2호 (그 밖에 사업)						
재원 조달	10,000,000	10,000,000	5,000,000	5,000,000	5,000,000	35,0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국고보조금					
	보통교부금					
	특별교부금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자체수입	10,000,000	10,000,000	5,000,000	5,000,000	35,000,000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기 타 (차입금, 만자 예비비 등)						

※ 2025년도 본예산 편성 후 기금 집행